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:김남희·전현희·강유정

서미화 · 민병덕 · 백승아

주철현 • 이수진 • 박수현

전진숙 · 정준호 · 양부남

조 국・민형배・오세희

박희승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, 현행 경로당외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운영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.

또한,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,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.

이에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

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 중 "소득보장·재가복지,"를 "소득보장·재가복지, 급식지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각종 情報交換"을 "급식지원, 각종 정보교환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취미생활·老人健康維持 ·所得保障"을 "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·급식지원"으로 한 다.

제37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"경로당에"를 각각 "경로당 등 노인여 가복지시설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경로당의"를 "경로당 등 노 인여가복지시설의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6條(老人餘暇福祉施設) ① 老	第36條(老人餘暇福祉施設) ①
人餘暇福祉施設은 다음 각 호	
의 施設로 한다.	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 •	1
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	
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	
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	
병예방과 소득보장・재가복	소득보장·재가복지 <u>,</u>
<u>지,</u>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	급식지원
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	
목적으로 하는 시설	
2. 敬老堂 : 地域老人들이 자율	2
적으로 친목도모・취미활동・	
공동작업장 운영 및 <u>각종</u> 情	급식지원,
報交換과 기타 餘暇活動을 할	<u> 각종 정보교환</u>
수 있도록 하는 場所를 제공	
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	
3. 老人敎室 : 老人들에 대하여	3
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	
키기 위하여 건전한 <u>취미생활</u>	<u>취미생활</u>
・老人健康維持・所得保障 フ	<u>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·</u>
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	급식지원

로그램을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

② (생 략)

제37조의2(<u>경로당에</u>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<u>경로당에</u>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 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 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<u>경로당의</u> 냉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<신 설>